

우선심사

Q 특허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등록을 받기 위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A 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에도 있습니다.

우선심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까지는 본 원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로 질문주시면 개별적으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고시제4조제1호).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고시제4조제2호).

다음의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인은 출원 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을 직접 조사하고 선행기술조사 결과 및 선행기술문헌과의 대비 설명을 우선심사신청설명서(고시 별지제5호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09.9.1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 이하 '자체 선행기술조사'라 함).

- 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사업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산물자 또는 그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
- 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 다.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 바.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당해 사업에 관한 국가기관의 장과 체결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기술개발을 추진한 결과물에 관한 출원
- 사.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기술에 관한 출원
- 아.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 자.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 차.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
- 카.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 출원
- 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8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 출원
- 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 출원
- 하.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방법에 관한 출원



김석현 변리사

한국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한 바 있고, 법무법인 총정에서 특허부를 총괄했다. 이지국특허법률사무소와 청구국특허법률사무소 등에서 대표 변리사를 지냈으며, 현재 특허법인 대아에서 파트너 변리사로 있다.

문의 : 02-565-2500

mail : kimsh@ipdraju.com